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연구*

- 삼척시를 중심으로 -

권건주

본 논문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9일 삼척시가 주관한 「2012년도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참석한 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지역자율방재단원 모집 시 선발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이끌어 갈 핵심 방재리더 육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대원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위탁교육 확대 및 재난훈련 시 훈련계획단계부터 방재단의 임원 참여와 현장위주의 훈련종목을 선정하는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사업집행 시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자율방재단과 지역재난단체 간에 빈번한 대면접촉을 통한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재, 교육훈련, 지역방재력

1. 서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해일 등 재난유형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재난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난발생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역에 한정되는 특성이 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재난이 발생하므로 발생지역에서의 초기 재난대응능력이 지역방재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수방단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 본 논문은 2012 국가위기관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방단은 재난발생 시 단원 응소률이 낮고,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실질적 재난관리 주민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대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을 2005년 1월 27일 전부 개정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새로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도 과거 수방단 조직과 같이 지역사회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방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4월 9일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시 참석한 12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역자율방재단의 개념 및 설치근거

태풍, 집중호우, 지진 및 지진해일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건물붕괴, 화재, 도로·교량 등의 손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화불통,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불능도 발생하여, 지방정부를 비롯한 소방서, 경찰서 등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거나 재난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경남, 2011: 9).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 중 또는 재난 직후 일정시간 동안 지역주민 개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구노력의 의지가 발원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는 재난 직후의 2차 피해방지, 긴급대응, 피해정보의 수집 및 전달, 이웃 피난유도, 피해자 구호, 응급조치, 이재민 돕기 등 시급하면서도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지역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지역자율방재단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는 <표 1>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2006.1.12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근거

관련법	조 항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www.law.go.kr(검색어: 자연재해대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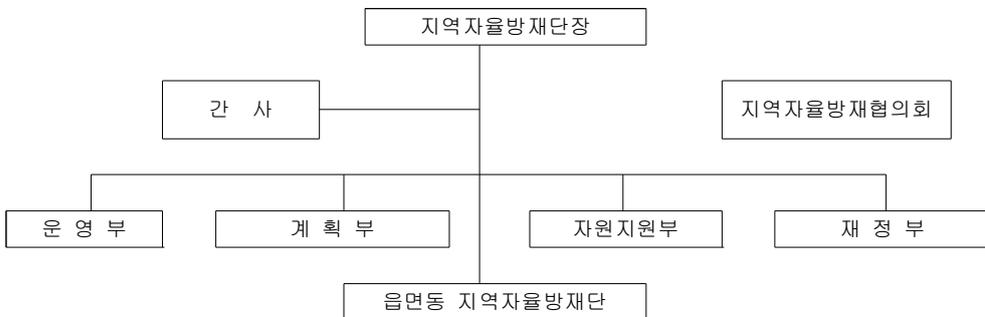
2.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단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고,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삼척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이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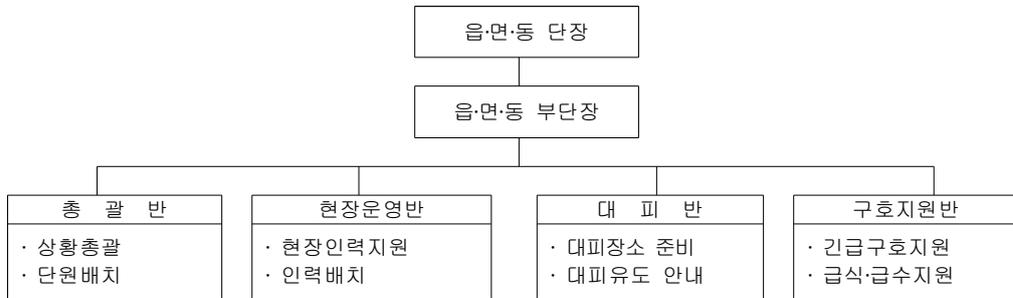
<그림 1>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모형

※ 자료: 강원도·지역자율방재단 강원도협의회(2011: 6).

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장, 지역자율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장은 지역자율방재단장이 맡으며, 지역자율방재협의회회의 소집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되며,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지방자치 단체의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삼척시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가 되며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도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2006년 3월 1일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모집공고를 통해 2006년 4월 30일 12개 읍면동 327명을 대상으로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발족하였다. 이후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을 정비하였으며 2007년 382명, 2008년 375명, 2009년 327명, 2010년 272명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감소하다가, 2011년 302명에서 2012년 5월 31일 현재 33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읍면동	합계	성 별		직 업 별								연 령 별					
		남	여	자영업	농어업	회사원	공무원	건설업	운수업	가사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 계	330	256	74	105	95	47	4	5	1	55	18	0	18	91	144	71	6
도계읍	22	22		5	1	14	1	1					5	11	6		
원덕읍	23	23		11		12								13	8	2	
근덕면	25	19	6	11	8					6			1	4	13	7	

하장면	15	15		1	14							1	3	11		
노곡면	23	23		1	22							1	3	8	8	3
미로면	25	21	4	3	18			1		3		2	5	9	9	
가곡면	24	24		6	12	3	1	1			1	1	5	10	8	
신기면	17	17		1	12	4								9	8	
남양동	60	31	29	30	3	5				20	2			16	31	13
성내동	38	26	12	22	4	4	2			6		3	12	16	7	
교 동	27	13	14	8		3		2		14		3	11	12	1	
정라동	31	22	9	6	1	2			1	6	15	1	8	11	8	3

※ 자료: 삼척시 내부자료(2012. 5. 31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평상시의 임무와 재난시의 임무로 나눌 수 있다.

평상시는 가령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예상되는 피해를 가능한 경감시키도록 하는 활동, 즉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방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제·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도 하게 된다.

한편 재난 시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역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기대응, 구출·구호, 피난유도 등을 실시하고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대응활동을 하게 되며,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 복구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는 <표 3> 과 같다.

<표 3>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조 례 명	주요임무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전개 등

※ 자료: www.elis.go.kr(검색어: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지방정부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크게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재난관리 회의 참석, 재난대응 교육·훈련, 재난관리장비 지원 등이 있고,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피복 구입, 보험가입, 체육행사 등 각종 비용 지원이 있다.

삼척시의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삼척시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내용

조 례 명	지 원 내 용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행정적 지원	1.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삼척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2.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3.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 이용.
	재정적 지원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자료: www.elis.go.kr(검색어: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 확보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삼척시의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시간은 임원(단장, 간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이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훈련의 경우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 훈련시간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III. 조사설계

본 설문조사는 삼척시가 주관하여 2012년 4월 9일 실시한 2012년도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시 참석한 관내 12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12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대원수 총 330명중 교육에 참석한 203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표 5>와 같이 111부(회수율 54.7%)이며 그 중 6부는 설문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105부를 표본으로 하여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위주로 분석하였다.

<표 5> 설문지 회수률

읍면동	배부량	회수량	회수율(%)	읍면동	배부량	회수량	회수율(%)
합 계	203	111	54.7				
도계읍	16	9	56.3	가곡면	14	8	57.1
원덕읍	15	7	46.7	신기면	12	8	66.7
근덕면	18	8	44.4	남양동	30	15	50.0
하장면	10	7	70.0	성내동	22	12	54.5
노곡면	14	8	57.1	교 동	17	9	52.9
미로면	15	9	60.0	정리동	20	11	55.0

IV. 설문분석 결과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설문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의 응답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추측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82	78.1
	여자	23	21.9
연 령	20 ~ 29세	0	0.0
	30 ~ 39세	3	2.9
	40 ~ 49세	25	23.8
	50 ~ 59세	48	45.7
	60세 이상	29	27.6
거주기간	5년 미만	3	2.9
	5 ~ 10년 미만	6	5.7
	10 ~ 15년 미만	11	10.5
	15 ~ 20년 미만	10	9.5
	20년 이상	75	71.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기간	1년 미만	2	1.9
	1 ~ 2년 미만	13	12.4
	3 ~ 4년 미만	40	38.1
	4년 이상	50	47.6
직 업	자영업(상업)	14	13.3
	농어업	52	49.5
	회사원	6	5.7
	공무원	2	1.9
	건설업	4	3.8
	운수업	1	1.0
	가 사	11	10.5
	기 타	15	14.3

성별은 남자가 82명(78.1%), 여자가 23명(21.9%)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이상 많았다. 연령은 50~59세가 48명(45.7%)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29명(27.6%), 40~49세가 25명(23.8%), 30~39세가 3명(2.9%), 20~29세는 0명(0.0%)순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은 75명(71.4%), 10~15년 미만이 11명(10.5%), 15~20년 미만이 10명(9.5%), 5~10년 미만이 6명(5.7%), 5년 미만이 3명(2.9%)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기간은 4년 이상이 50명(47.6%), 3~4년 미만이 40명(38.1%), 1~2년 미만이 13명(12.4%), 1년 미만이 2명(1.9%)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농어업이 52명(49.5%), 기타가 15명(14.3%), 자영업(상업)이 14명(13.3%), 가사가 11명(10.5%), 회사원이 6명(5.7%), 건설업이 4명(3.8%), 공무원이 2명(1.9%), 운수업이 1명(1.0%)순으로 나타났다.

2.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1)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에 관한 설문은 지역자율방재단 참여의 자발성 여부와 참여하게 된 동기로 구성되며 <표 7>과 같다.

우선, 지역자율방재단의 자발적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그렇다가 92명(87.6%), 아니다가 13명(12.4%)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에 대하여는 자발적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동기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가 67명(63.8%), 사회참여(자아실현)를 위해가 18명(17.2%),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가 12명(11.4%),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가 8명(7.6%) 순으로, 대부분 개인적인 사익보다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자율방재단 참여동기

문항	분류	빈도(명)	비율(%)
지역자율방재단 자발적 참여여부	그렇다	92	87.6
	아니다	13	12.4
지역자율방재단 참여동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67	63.8
	사회참여(자아실현)를 위해	18	17.2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12	11.4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기 위해	8	7.6
	본인사업을 위해(직업상 필요)	0	0.0

2)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도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도에 관한 설문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정도,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로 구성되며 <표 8>과 같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정도는 보통이다가 46명(43.8%), 활성화되어 있다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각각 25명(23.8%),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가 5명(4.8%),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4명(3.8%) 순으로 나타나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방재단원의 참여의식 부족이 35명(33.3%), 교육훈련이 부족해서가 25명(23.8%), 방재리더의 역량부족이 21명(20.0%), 자치단체의 관심부족이 20명(19.1%), 타 봉사조직 간의 갈등 때문인가 4명(3.8%)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초기에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타 봉사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외적요인보다 내적요인에 기인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8>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 정도

문항	분류	빈도(명)	비율(%)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 정도	보통이다	46	43.8
	활성화되어 있다	25	23.8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25	23.8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5	4.8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4	3.8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방재단원의 참여의식 부족	35	33.3
	교육훈련이 부족해서	25	23.8
	방재리더의 역량부족	21	20.0
	자치단체의 관심부족	20	19.1
	타 봉사조직간의 갈등 때문에	4	3.8

3)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평소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공무원의 대우에 대한 만족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만족도

문항	분류	빈도(명)	비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만족도	보통이다	50	47.6
	만족한다	40	38.1
	매우 만족한다	8	7.6
	불만족한다	7	6.7
	매우 불만족한다	0	0.0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만족도	보통이다	50	47.6
	만족한다	30	28.6
	불만족한다	19	18.1
	매우 만족한다	6	5.7
	매우 불만족한다	0	0.0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공무원 대우에 대한 만족도	보통이다	64	61.0
	만족한다	25	23.8
	매우 만족한다	12	11.4
	불만족한다	4	3.8
	매우 불만족한다	0	0.0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프로그램	활발한 봉사활동	43	41.0
	전문 소방방재교육 강화	29	27.6
	지역자율방재단의 친목기능강화	23	21.9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강화	8	7.6
	기타	2	1.9

우선, 평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0명(47.6%), 만족한다가 40명(38.1%), 매우 만족한다가 8명(7.6%), 불만족한다가 7명(6.7%), 매우 불만족한다가 0명(0.0%)순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만족하는 대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대원들보다는 많았으나 보통이다의 응답도 50명(47.6%)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양양 시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0명(47.6%), 만족한다가 30명(28.6%), 불만족한다가 19명(18.1%), 매우 만족한다가 6명(5.7%), 매우 불만족한다가 0명(0.0%)순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공무원 대우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4명(61.0%), 만족한다가 25명(23.8%), 매우 만족한다가 12명(11.4%), 불만족한다가 4명(3.8%)순으로 응답자의 64명(61.0%)이 보통이다로 응답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과 공무원 간의 관계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프로그램으로는 활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43명(41.0%), 전문 소방방재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29명(27.6%), 지역자율방재단의 친목기능강화 프로그램이 23명(21.9%), 공무원과 유대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8명(7.6%), 기타 프로그램이 2명(1.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문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동기에 관한 질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것과 관계가 깊으며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활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방재단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4)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에 대한 설문은 지역방재 전문봉사자로의 인식,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전문

성 정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화 방안으로 구성되며 설문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

문항	분류	빈도 (명)	비율 (%)
지역방재 전문봉사자로서의 인식	보통이다	49	46.7
	그렇다	44	41.9
	아니다	7	6.7
	매우 그렇다	5	4.7
	전혀 아니다	0	0.0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전문성 정도	보통이다	53	50.5
	전문적이다	23	21.9
	비전문적이다	20	19.0
	매우 비전문적이다	6	5.7
	매우 전문적이다	3	2.9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화 방안	방재관련 교육훈련 강화	38	36.2
	지역자율방재단의 장비보강	33	31.4
	지역자율방재단의 선발기준 강화	27	25.7
	기타	7	6.7

우선, 지역방재 전문봉사자로서의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는 보통이다가 49명(46.7%), 그렇다가 44명(41.9%), 아니다가 7명(6.7%), 매우 그렇다가 5명(4.7%), 전혀 아니다 0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절반정도가 지역방재 전문봉사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봉사자로서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전문성 정도에 대하여는 보통이다가 53명(50.5%), 전문적이다가 23명(21.9%), 비전문적이다가 20명(19.0%), 매우 비전문적이다가 6명(5.7%), 매우 전문적이다가 3명(2.9%)순으로 나타나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역할 및 임무에 대하여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방재단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화 방안으로는 방재관련 교육훈련 강화가 38명(36.2%), 지역자율방재단의 장비보강이 33명(31.4%), 지역자율방재단의 선발기준 강화가 27명(25.7%), 기타가 7명(6.7%)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선발 시 일반인 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한 대원위주로 신규대원을 선발하고, 대원들이 전문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록 각종 장비를 보급해 주어야 하며, 재난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방재단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재단원들이 재난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지원제도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설문은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설문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문항	분류	빈도 (명)	비율 (%)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	그렇다	81	77.1
	아니다	24	22.9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출동비 지급	36	34.3
	상해보험 가입	36	34.3
	기본장비(신호봉 등) 지급	18	17.1
	피복비(우의 등) 지급	9	8.6
	자녀장학금 지급	6	5.7

우선,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렇다가 81명(77.1%), 아니다가 24명(22.9%)순으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이 각각 36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본장비(신호봉 등) 지급이 18명(17.1%), 피복비(우의 등) 지급이 9명(8.6%), 자녀장학금 지급이 6명(5.7%)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평시 또는 재난발생 시 방재활동을 할 경우 출동비 지급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분석

지역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정도에 대한 설문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업무협조 정도, 타 재난관련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업무협조 정도로 구성되며,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지역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정도

문항	분류	빈도 (명)	비율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간의 업무협조 정도	보통이다	60	57.1
	긴밀하다	32	30.5
	긴밀하지 않다	7	6.7
	매우 긴밀하다	5	4.7
	매우 긴밀하지 않다	1	1.0
타 재난관련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간의 업무협조 정도	보통이다	56	53.3
	긴밀하지 않다	22	21.0
	긴밀하다	21	20.0
	매우 긴밀하다	4	3.8
	매우 긴밀하지 않다	2	1.9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업무협조 정도는 보통이다가 60명(57.1%), 긴밀하다가 32명(30.5%), 긴밀하지 않다가 7명(6.7%), 매우 긴밀하다가 5명(4.7%), 매우 긴밀하지 않다가 1명(1.0%)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율방재단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 관련 회의 시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을 적극적으로 참석시키고, 재난교육훈련 시에도 교육훈련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타 재난관련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업무협조 정도는 보통이다가 56명(53.3%), 긴밀하지 않다가 22명(21.0%), 긴밀하다가 21명(20.0%), 매우 긴밀하다가 4명(3.8%), 매우 긴밀하지 않다가 2명(1.9%)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평시에 재난관련단체 간의 유대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시 재난관련단체 간 대면교류 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난의 양상이 대규모화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 피해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官)위주의 방재정책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민간위주의 방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민간

방재조직인 수방단을 방재기능을 강화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으로 변경하였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초기에는 기존의 재난관련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과 대원 모집과 정에서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현재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활동면에서는 아직도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4월 9일 삼척시가 주관한 2012년도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참석한 12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분석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율방재단의 선발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관변단체이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방재전문봉사자이다. 그러므로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관련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모집공고 시 선발기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및 참여를 원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로 열려 있지만 보다 강화된 선발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이끌어 갈 핵심 방재리더 육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 방재전문가가 없거나 방재전문가가 있더라도 자질이 부족할 경우 자질있는 방재전문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은 지역의 핵심방재리더로 육성하여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핵심방재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방재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자율방재단 핵심리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 양성된 핵심방재리더들이 지속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과 선진방재 지방자치단체 견학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기능이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재난관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으로 대원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원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훈련 시에도 훈련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위주의 훈련종목을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시·군·구 전체 지역자율방재단이 참가하는 방재기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이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재정적 지원의 재원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에 의해 조성되는 만큼 재난관련 보조사업비 집행 시 투명성과 합법성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관련단체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

부의 적극적으로 역할이 요구되며 각 재난관련단체 간에 평소 대면접촉이 빈번하여야 하며 이는 재난발생 시 긴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평시에 각 재난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연수회, 워크숍 등 지역 재난관련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지역자율방재단 강원도협의회. 2011. 자율방재단 정책 간담회 자료.
- 국립방재연구소. 2002.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안전봉사자 활성화방안 연구.
- 김경남. 2007. 지역재난관리에 있어 주민조직의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경남. 2011. 강원도의 잠재적 거대재난 유형 분석 및 긴급대응 대책. 강원발전연구원.
- 변윤석. 2008.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방방재청a. 2008. 민간방재역량 강화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 소방방재청a. 2011. 지역자율방재단의 이해(초급).
- 소방방재청b. 2008.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자료.
- 소방방재청b. 2011. 지역자율방재단의 이해(중급).
- www.elis.go.kr(검색어: 삼척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www.law.go.kr(검색어: 자연재해대책법).

權建周: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행정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현재 삼척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역재난관리정책, 재난문화, 위기관리 등이며, 주요저서는 재난관리론(이재은 외 2006),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 문제점과 향후과제(위금숙 외, 2009)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2005),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기관간 역할 분석(2007), 지역방재력 평가에 관한 연구(2): 강원도를 중심으로(2009) 등이 있다(ibada@korea.kr).

투 고 일: 2013년 02월 06일

수 정 일: 2013년 0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03월 27일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the Citizens Corps Active In Disaster

– With Special Reference to SamCheok City, Korea –

Gun Ju Kwon

This study took a survey with the members of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that participated in "Education on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in Samcheok City in 2012," which was held by Samcheok City on April 9, 2012, in order to investigate ways to activate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The survey results led to the following ways to activate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election criteria when recruiting new members of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second, a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which will bring up core leaders of disaster prevention to lead the organization of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thir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reinforced by expanding the development and outsourced education of member-participatory educational programs for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and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executives of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and selecting field-centric training events from the training planning stage for disaster training; fourth, it is required to exp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which in turn should secure the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its projects; and finally,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should consolidate its connections with local disaster organizations through frequent face-to-face contacts with them.

Key Words: citizen corps active in disaster, autonomous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